

유의사항

1.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대표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모의총포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(이하 "모의총포"라 합니다)를 말하며, 발사장치란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(이하 "발사장치"라 합니다)를 말합니다.
3.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제조시설의 구조·설비 및 위치
 - 나. 제조방법
 - 다.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종류와 사용방법·성능 및 특징
 - 라.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보관 또는 저장 방법
 - 마.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
 - 바. 자본금

처리절차

